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9.7.9.(화) 16:00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박우양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6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3. 제안 이유

○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,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직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개정(안 제2조)
- 나.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(안 제3조)
- 다.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(안 제8조, 안 제13조, 안 제18조)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상위 법의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, 정부조직의 명칭 변 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